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4. 9. 4(수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

(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6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셔틀버스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, 이용료, 운행범위, 운행시간 규정
(안 제3조 및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,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공공시설 및 셔틀버스에 대한 본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함

2) 셔틀버스 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

○ 셔틀버스 운영을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함

3) 이용대상자(안 제4조)

○ 보건소, 자치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자 및 교통약자를 셔틀버스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

4) 이용료 무료(안 제5조)

○ 셔틀버스 이용료가 무료임을 명시하였고, 공익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5) 운행범위 및 운행시간(안 제6조, 제7조)

○ 운행범위 : 셔틀버스가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

- 셔틀버스 운영 대수와 노선 지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구간을 최소화하여 운수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될것임

○ 운행시간 :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, 운행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교통 및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으며,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익성에 부합되는 교통서비스 정책은 타당하고 필요하다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주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보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74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

1. 14., 2016. 3. 29., 2020. 12. 22., 2022. 1. 18.>

1.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2. ~ 8. (생략)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6. 1.]